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
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911호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